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 ¹⁾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1. 배우자 관계³⁾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⁴⁾ : _____ , _____
3. 국외출생자명⁵⁾ : _____ , _____ 4. 복수국적자명⁶⁾ : _____ , _____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주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⁸⁾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

작성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를 모두 기재
- 원활한 결과 통지를 위해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 3), 4) 해당자에 한함
- 5), 6) 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 7)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8)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안내 사항

신청 기간	-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인 경우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신청하여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기한	- 14일 : 유아학비, 양육수당(연장시 30일)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 특별지원, 부모급여(연장시 60일),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계 법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 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류	추가 제출서류
----------	---------

<p>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¹³⁾,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p>	<p>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u>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u>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통장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u>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자산형성사업 참여(변경) 신청서</u>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권자에 한함)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p>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u>자산형성</u>)</p>	<p><u>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u>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자산형성사업 참여(변경) 신청서</u>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권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3)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가입연도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처리기간
가입기수				- 희망저축Ⅰ 30일
가입은행	하나은행			- 희망저축Ⅱ 70일
				- 청년내일 100일

구분	<input type="checkbox"/>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자활사업 참여시 사업단 유형	
	<input type="checkbox"/>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input type="checkbox"/> 시장진입형 <input type="checkbox"/> 시간제일자리 <input type="checkbox"/> 예비자활기업	
	<input type="checkbox"/>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청년)		<input type="checkbox"/> 청년자립도전사업단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input type="checkbox"/> 인턴·도우미형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비상연락	관계		성명	아무개	연락처					
	직업				근무지명			근무기간	~		
	근무형태	<input type="checkbox"/> 상용직(정규직) <input type="checkbox"/> 임시직(계약직, 기간제) <input type="checkbox"/> 일용직 <input type="checkbox"/> 아르바이트(시간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자영업자									

※ 신청자와 가입자가 다를 경우 기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자와 가입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적립 및 기타 정보	1. 월별 저축액 (약정금액)	최소 100,000 원 (*100,000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생성) ※ 저축기간 <input type="checkbox"/> 최대 36개월 <input type="checkbox"/> 최대 60개월(군입대한 경우)										
	2. 저축액 사용계획											
	- 저축목적	<input type="checkbox"/> 주택구입·임대 <input type="checkbox"/>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input type="checkbox"/> 창업·운영자금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개인자산형성(ISA·일반적금)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본인부담금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돌봄비용 <input type="checkbox"/> 결혼자금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자립·자활										
	- 향후 자립·자활계획											

※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 미작성 및 중복참여 여부 확인 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여부	미참여 / 참여 (사업명: _____, 기간: _____, 수령액: _____)
희망·내일키움통장 등 재가입 여부	최초 / 재가입 (사업명: _____, 참여기간: _____, 적립횟수: _____)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미참여 & 최초 가입자라 하더라도, 필수기재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는 추후 지자체와 연락관계를 가지며, 선정 후 신용교육 등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불참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기간 동안 매월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 내 입금하여야 당월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저축 동의서

□ 동의

- 나는 희망저축 I · 희망저축 II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을 자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 나는 목적으로 설정한 적립수준을 달성하기 전까지 매달 저축할 것입니다.
- 지원금은 목적 달성 시에만 지급해지(지원금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조건

1. 공통

- 가입 첫 월 본인적금계좌 개설 및 적금을 납입하여야 참여가 확정됩니다.
- 각 사업별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본인 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됩니다.
- 만약 저축목적 달성을 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좌관리은행은 매달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좌의 적립금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 사업별

※ 지급요건 중 밑줄친 부분을 자필로 작성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저축계좌 I (생계 · 의료수급자통장)

[] 동의

- 지원금 적립기준	당월 본인적금 적립 + 가구 총 근로 · 사업소득 하한기준 이상 발생
- 환수사유	3년 만기 후 유예기간 6개월 내 탈수급 못한 경우, 일부지급해지 후 재가입하였으나 지급요건 미충족, 근로 · 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압류 · 가압류, 탈수급 전 본인 요청시 등
- 지원금 지급요건	3년 이내 <u>탈수급</u> ※ 생계, 의료급여 모두 벗어나야 하며, 본인 포기로 인해 수급을 받지 않는 경우 탈수급으로 인정하지 않음

저축 동의서

※ 지급요건 중 밑줄친 부분을 자필로 작성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저축계좌II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의 통장) [] 동의

- 지원금 적립기준	당월 본인적금 적립
- 환수사유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교육 이수시간 및 사례관리 횟수 미충족,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구, 압류·가압류, 3년만기 전 본인 요청시,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 요청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지원금 지급요건	3년 간 통장 유지 + <u>교육(총 10시간)</u> 이수 + <u>자금사용계획서 제출</u>

※ 지급요건 중 밑줄친 부분을 자필로 작성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 동의

- 지원금 적립기준	당월 본인적금 적립
- 환수사유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교육 이수시간 미충족,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구, 압류·가압류, 3년만기 전 본인 요청시, 본인 사망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지원금 지급요건	3년 간 통장 유지 + <u>교육(총10시간)</u> + <u>자금사용계획서 제출</u>

□ 계약

나는 위의 계약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희망저축계좌 I · 희망저축계좌 II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 지원 등에 대한 모든 효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동 의 합 니 다.**

년 월 일

희망저축계좌 I · 희망저축계좌 II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가입 신청서를 작성 전 아래 내용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가입요건 확인 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	-------------	--------	------

구분	점검 내용	선택체크																																	
필수 가입요건	1. 귀하는 연령 및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합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3" style="width: 10%;">가구구분</th>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원/월)</th> </tr>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50% 이하</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100% 이하</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소득인정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연령</th> <th style="text-align: center;">소득인정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연령</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인 가구</td> <td style="text-align: right;">1,196,007</td>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만 15~39세</td> <td style="text-align: right;">2,392,013</td>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만 19~34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인 가구</td> <td style="text-align: right;">1,966,329</td> <td style="text-align: right;">3,932,658</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인 가구</td> <td style="text-align: right;">2,512,677</td> <td style="text-align: right;">5,025,35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인 가구</td> <td style="text-align: right;">3,048,887</td> <td style="text-align: right;">6,097,77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인 가구</td> <td style="text-align: right;">3,554,096</td> <td style="text-align: right;">7,108,19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인 가구</td> <td style="text-align: right;">4,032,403</td> <td style="text-align: right;">8,064,805</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통장 유지 및 중도지급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사업 소득에서는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을 제외합니다. (단, 자활근로사업 소득은 인정)</p>	가구구분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원/월)				50% 이하		100% 이하		소득인정액	연령	소득인정액	연령	1인 가구	1,196,007	만 15~39세	2,392,013	만 19~34세	2인 가구	1,966,329	3,932,658	3인 가구	2,512,677	5,025,353	4인 가구	3,048,887	6,097,773	5인 가구	3,554,096	7,108,192	6인 가구	4,032,403	8,064,805	예, 아니오
	가구구분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원/월)																																
			50% 이하		100% 이하																														
		소득인정액	연령	소득인정액	연령																														
	1인 가구	1,196,007	만 15~39세	2,392,013	만 19~34세																														
	2인 가구	1,966,329		3,932,658																															
3인 가구	2,512,677	5,025,353																																	
4인 가구	3,048,887	6,097,773																																	
5인 가구	3,554,096	7,108,192																																	
6인 가구	4,032,403	8,064,805																																	
2. 귀하는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증명 서류' 등을 통해 확인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업 업종 종사자	예, 아니오																																		
3. 귀하가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이면 통장 가입 및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4. 귀하는 가입기간 중 교육 총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통장 유지 및 정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여가 가능합니까?	예, 아니오																																		
5.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해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귀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필수기재

[담당 공무원 확인용]

확인일		확인자 성명	(서명)	점검결과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	--------	------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대상자	사업명		가입기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핸드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 I·II, 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안내 및 현황 관리 ▶ 사업 개발,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연구 및 고객 만족도 조사 등 활용
수집·이용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식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국적, 전화번호 등 연락처, 주소, 근무지, 직업, 이메일, 주거 및 가족사항, 세대구성, 결혼여부, 소득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참여 종결 후 10년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참여 종결 후에는 위의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업 및 서비스 안내 등 편의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div>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div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div>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 1·II, 내일·청년희망, 청년저축계좌) 운영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위한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하나은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위탁기관 및 동 사업 연구조사 기관 - 계약에 의한 자산형성지원사업관련 조사·연구수행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 1·II, 내일·청년희망, 청년저축계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처리, 관리, 연구 개발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식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국적, 전화번호 등 연락처, 주소, 근무지, 직업, 이메일, 주거 및 가족사항, 세대구성, 결혼여부, 소득 등
변경에 관한 사항	위 제공대상 기관, 이용목적, 제공대상 항목 세부적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전화 및 우편, 메일로 공지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참여 종결 후 10년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참여 종결 후에는 위의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업 및 서비스 안내 등 편의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여부	<p>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고유식별 정보 동의여부	<p>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관련 대상자 권리 안내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만 14세 미만 대상에 대한 개인정보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 (인감 포함) 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 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1), 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 ³⁾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 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맞춤형 급여 안내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위한 수급가능성 확인,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및 농협은행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 하면, 이후 주기적인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재산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 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신청인과 가구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사업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및 제4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